

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심야약국
운용 지원 조례안
(보건소 의약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523호

나. 제출자 : 이인식 의원, 정재동 의원, 도병두 의원

다. 제출일자 : 2024. 4. 15.

라. 회부일자 : 2024. 4. 15.

2. 제안이유

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의 안전한 제공 및 의약품의 정확한 복약 지도 등을 통한 의약품 오·남용 예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의약품 안정사용과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(안 제4조)

라.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(안 제5조)

마.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 및 지원금 환수(안 제6조 및 제7조)

바.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홍보(안 제8조 및 제9조)

4. 관계법령

- 「약사법」 제21조의3
-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공공심야 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의약품 안정사용과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9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주요내용은
 -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
 - 안 제3조에서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 제공, 공공심야약국의 지역별 균형 운영,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·협회 등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
 - 안 제4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비용의 지원에 대하여
 - 안 제5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에 대하여
 - 안 제6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에 대하여

-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에 대하여
- 안 제8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
- 「약사법」 제21조의 3 신설로(2024. 4. 19 시행) 구청장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대한 법률 근거가 마련되었으며,
- 현재 서울시와 9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우리구에서는 시흥5동에 1개소만 심야약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가산동 및 독산동 지역에 추가 지정·운영이 필요해 보임.
- 본 조례 제정안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약사법

[시행 2024. 4. 19.] [법률 제19359호, 2023. 4. 18., 일부개정]

제21조의3(공공심야약국의 지정·운영 등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(이하 “공공심야약국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공공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
3. 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4.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5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⑥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⑦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.

⑧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기준·방법 및 절차,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3. 4. 18.]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6. 11.] [법률 제18897호, 2022. 6. 10., 타법개정]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 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3. 13.>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·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,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2. 3., 2018. 3. 13.>

보건의료기본법

[시행 2021. 3. 23.] [법률 제17966호, 2021. 3. 23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(財源)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, 의약품,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(危害)를 방지하고,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3. 17.]